

의안번호	제 802 호
의 결 연 월 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1월 15일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02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15일

발의자 : 조성태, 최정훈, 안지윤,
김국기, 박재주, 안치영,
오영탁

1. 개정이유

-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중 장학생에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여 새마을운동 자녀들의 장학금 지원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 장학생 선발자격 중 새마을 지도자 한명에 대하여 한자녀를 새마을 지도자 한명에 대하여 당해연도 한자녀로 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 장학금액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의 120퍼센트에서 200만원 범위로 변경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 나. 관련부서 : 행정국 도민소통과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 라. 조례안예고 : 예고대상(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여한 자” 를 “기여한 사람” 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성적이나 재학생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3. 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장학생은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장학생 선발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새마을지도자 한 명에 대하여 해당년도 한자녀로 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

제9조제1항 중 “매 학기 개시 30일 이내” 를 “1학기 개시 후 90일 이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를 “200만원 이내로 한다” 로 하고, “범위 내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한다.

제12조 중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를 “장학생 선정 후” 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선발된 자가” 를 “선발된 사람이”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포상)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p> <p>제7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성적이나 재학생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3. 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 	<p>제5조(포상)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p> <p>제7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성적이나 재학생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3. 특기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p>② 장학생은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p>

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장학생 선발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새마을지도자 한명에 대하여 한자녀로 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

제9조(선정) ① 도 새마을 회장은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최종 결과를 도지사에게 매 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도 충청북도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 4. (생략)

제11조(장학금액) 고등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

자녀로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장학생 선발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새마을지도자 한명에 대하여 해당년도 한자녀로 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

제9조(선정) ① 도 새마을 회장은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최종 결과를 도지사에게 1학기 개시 후 9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도 충청북도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장학금액) 고등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

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교 장학생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군수와 도 새마을회 시·군지회장이나 시·군 새마을회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교 장학생은 매년 2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군수와 도 새마을회 시·군지회장이나 시·군 새마을회장이 장학생 선정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새마을운동조직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의 범위를 해당년도 한자녀와 매년 200만원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제3장)

3. 관련조문

- 제7조(장학생 자격) ② 장학생 선발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새마을지도자 한명에 대하여 해당년도 한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
- 제11조(장학금액) 고등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교 장학생은 매년 2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7조 및 제11조의 새마을자녀 장학금 지급액에 대한 비용 추계

나. 추계 결과 : 1,687,500천원

○ 연 사업당 최대 337,500천원 소요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337,500	337,500	337,500	337,500	337,500	1,687,500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50%, 시군비50%)	337,500 (172명)	337,500 (172명)	337,500 (172명)	337,500 (172명)	337,500 (172명)	1,687,500 (860명)

□ 2024년도 장학금 집행현황

- 예산현액 : 337,500천원(도비 168,750/ 시군비 168,750)
- 선발인원 : 172명
- 집행액 : 269,148천원(도비 134,574/ 시군비 134,574)
- 집행잔액 : 68,352천원(도비 34,176/ 시군비 34,176)

□ 장학생 선발기준

- 1순위: 활동실적, 유공자 자녀, 성적우수자 (최초수혜자)
 - 2순위: 기 수혜 지도자 자녀, 타장학금 중복 수급자 등
- ⇒ 1순위 대상자 우선선발 후, 잔여 예산 내 2순위 수혜자 선발